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53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6월 5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험가입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나.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다. 보험료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, 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전동보장구”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.
3. “전동보장구 보험”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험가입 대상)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5조(보험회사의 선정) 구청장은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6조(보험료 납부)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
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.

제7조(보험계약의 내용) 보장대상, 보장기간, 보험료,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
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.

제8조(보험금 청구 등)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
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. 다만
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
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
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
료, 보장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험가입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
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·군·구로 전출한 경우(다른 지방자
치단체로 전출한 경우)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
3.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